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64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 의 자 : 전현희 · 이수진 · 최혁진
한준호 · 정을호 · 홍기원
김영배 · 김 윤 · 박균택
정태호 · 김용만 · 장경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톱킹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대상자 외 만기 출소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 출소한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상이할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연장 신청을 누락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스톱킹범죄를 범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하여 스톱

킹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신청 시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 병과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호의2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접근 금지 조치가 병과되거나 그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4 다음의 “제3장 벌칙”을 “제4장 벌칙”으로 한다.

제3장(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보호관찰

제17조의5(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검사는 스톱킹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스토킹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 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의6(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7조의7(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交友)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8(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

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톱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범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 ----- ----- ----- ----- ----- ----- ----- <u>. 이 경우 제3호의2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접근 금지 조치가 병과되거나 그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u>
1. ~ 4. (생략)	1. ~ 4. (헌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헌행과 같음)
<u><신설></u>	<u>제3장 보호관찰</u>
<u><신설></u>	<u>제17조의5(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검사는 스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u>

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스토킹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 설>

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
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
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
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하
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
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 대
상자”라 한다)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되, 보호
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
다.

제17조의6(보호관찰 대상자의 보
호관찰 기간 연장 등) ① 보호
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
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
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
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
사의 청구로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
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7조의7(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交友)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8(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

제3장 벌칙	<u>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u> 제4장 벌칙
--------	------------------------------------